| 전치 |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책임편집 : 오건 디자인 : 김춘만 | 4월 4분

# 먄마전신사기범죄그룹 21 명 용의자 기소



최근, 광동성 심수시인민검찰원 은 장기간 먄마 북부 과감지역에서 무장세력을 앞세워 주로 중국 공민 을 대상으로 대규모 전신 인터넷 사 기 등 범죄를 저지른 백가 (白家) 범 죄집단의 수장 백소성 (외국명 BAY SAW CHAIN), 백응창(외국명 BAY YIN CHIN) 및 기타 중점 사 건 관련자 등 21 명에 대해 〈중화인 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형 사소송법〉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사기죄, 도박장 개설죄, 공갈사기 죄, 고의살인죄, 고의상해죄, 랍치 죄와 마약판매제조죄 등 혐의로 광 동성 심수시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백소성을 수장으로 하는 백가범죄 집단은 불법리익을 취득하기 위해 만마 북부에 위치한 과감지역에서 자신들 가족의 정치, 군사, 경제 등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리용하여 창승 과학기술원, 백승빌딩, 등룡, 흠백 리, 왕자홍루, 백학공관 등 41 개 대 형 도박사기단지를 개발 건설, 한편 으로는 도박 지시 및 사기 범죄조직 들을 입주시켜 대중들을 상대로 허위 투자, 허위 신용정보, 허위 고객봉 사 등 인터넷 사기와 도박 등 위법범 죄행위를 벌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공민을 끊임없이 유인해 불법으 로 출국시킨 후 도박과 사기 활동에 참여시켰다. 동시에 백가범죄집단 은 주도적으로 과감오락관리위원회 를 설립해 도박 및 사기 단지들에 통

일적으로 홍보허가증을 발급하고 임 대료와 인건비, 안전보험비 등을 받 아 막대한 불법리익을 챙겼다. 특히 백가범죄집단은 장기간 '사기를 통 해 군력을 유지하고 군력을 통해 사 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도박 및 사 기 단지들에 대해 무장 통제를 실시 하고 '보호'하고 있었는데 관리에 복



종하지 않고 사기 실적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전화사기 인원들에 대해 '금주'들이 폭력으로 통제와 학대, 구타뿐만 아니라 심지 어 살해하는 것도 방임했다.

2023년 11월, 중국 공안부는 광동성 심수시 공안기관을 주축으로 백가범죄집단 전문 사건을 수사했다. 같은해 12월 10일, 공안기관은 대량의 위법범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한 토대에서법에 따라 백소성, 백응창, 백응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현상수배를 했다. 2024년 1월 30일, 중국과 먄마집법안전협력체계를 통해 먄마측은 백소성, 백응창을 중국에 넘겼다. 현재까지 백가범죄집단 사건과 관련된 36명의 주요 범죄용의자들이 모두체포되였다.

백가범죄집단의 중국과 관련된 불법 범죄 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위 해 중국—먄마 법집행 안전협력 체계 의 틀내에서 우리 나라 공안기관은 전 쟁 위험을 무릅쓰고 5차례에 걸쳐 먄 마 북부에 특별수사팀을 파견해 먄마 집법기관과 협력하여 많은 노력과 세 심한 작업을 수행했으며 피해자의 유 골, 범죄용의자들의 마약 제조 도구 등 다수의 핵심 물증을 압수했다. 동 시에 심수 공안기관은 천여명의 정예 경찰력을 전국 200 여개 도시로 파견 해 수천명의 전화사기 피해자를 개별 적으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전 면적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절강성 주 산시공안기관은 사건 수사에 적극 협 조하여 중요한 범죄용의자를 체포하고 증거 사슬을 보완했다.

공안기관은 수사를 거쳐 사기, 고의살인, 고의상해, 랍치, 갈취, 도박장개설, 타인을 조직해 국경을 불법으로 넘나들게 하거나 강제매춘, 마약 제조 및 판매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백소성과 백응창을 수장으로 하는 백가범 죄집단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이과정에서 중국 국민 6명이 사망했다. 사기 관련 사건은 무려 3만 1,000 여건에 달하고 사기 관련 금액은 무려 106억원을 초과했으며 제조 판매한 마약은 11톤에 달했는바 그

가치는 180 억원을 초 과했다.

/ CCTV 넷



[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

# 재한 외국인, 한국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면 강제추방당할 수도

최근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대통령 했다. 이어지는 탄핵, 내란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 정 국인들이 정치홑 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련이어 제 무부 장관이 서 기되며 전국 주요 지역에서 다수의 정 또는 그 밖에 필 치적 집회 및 시위가 련일 개최되고 다고 명시했다. 있는 실정이다. 한국 출입국

이와 같은 정세 속에서 일부 재한 외국인들이 정치적 집회나 시위 현장 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 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문제와 행정처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 고 있다.

#### 출입국관리법상 정치활동 금지 규정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재한 외국인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한국의 현행법상 어떠 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

한 검토가 요구된다.
아울러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와 외국 공관의 공식적인 대응 등을 통 해 체류중인 재한 외국인에게 요구되 는 법적 류의사항과 행정적 주의 의 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 17 조 제 2 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재한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했다. 이어지는 제 3 항에서는 재한 외국인들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활동 중지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22 조는 이러한 활동 중지 명령에 포함 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렬거하고 있으며 특히 명령 불리행 시 강제 퇴거 등 조치를 예고할 수 있다고 명 확히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 46 조 제 1 항 제 8 호는 정치활동 등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 재한 외 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 주한 중국대사관의 공식 경고

이와 관련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2025년 1월 5일자로 공지문을 발표하여 한국에 체류중이거나 방문중인 중국 공민에게 정치활동과 관련된 법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출입 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 외국인 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 반 시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을 수 있 다."라고 하면서 재한 중국 공민들에 게 정치적 집회 장소 접근 자제, 정 치적 발언 회피, 교통통제 상황 류 의, 그리고 신체 안전 확보를 강력히 권고했다. 실제 사례 : 미셸 카투이라 사건

재한 외국인의 정치활동이 출입국 관리상 불리익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2년 발생한 미셸 카투이 라 사건이 있다. 이는 해당 사안의 법 적 함의를 리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당시 필리핀 국적의 미셸 카투이라 씨는 한국 서울·경기·인천 이주로동 자로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실제 근 로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유, 즉 '허 위 취업'을 리유로 출국 명령을 통지 받았다. 이에 불복한 카투이라씨는 한 국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 송을 제기했으며 1 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 서울행정법원은 "카투이라씨 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 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 며 출국 명령이 로조 활동에 대한 보 복성 처분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 로 판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카투이라씨는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재입국을 시도했으나 입국 금지 명단에 포함되였다는 리유로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거부되여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였다. 이로 인해 항소심에 출석할 수 없게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소송이 각하될가능성에 직면했다. 이는 정치활동이

출입국관리 절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 신중함과 준법의 필요성

상기와 같이 관련 법령, 외교공관의 경고, 그리고 실질적인 사례를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 체류중인 재 한 외국인, 특히 중국 국적의 류학생 및 단기 방문자는 정치적 표현이나 집 회·시위 참여 등 정치활동으로 해석 될 수 있는 일체 행위에 대하여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재한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그 개념과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일시적인 집회 참석이라 하더라도 입국불허, 강제퇴거, 체류자격취소 등 중대한 불리익이 발생할 수있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중인 재한 외국 인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불필요 한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태도를 견지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법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는 재한 외국인 개인의 체류 안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한국 사회와 재한 외국인 사회간의 상호 신 뢰 형성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

/ 리현 (한국 경기대학 교 정치법학 박사연구생)



#### 매달 15 일

## 길림성 공안기관 '공개 래신래방 접대일'로

길림성공안청은 경찰과 대중간의 련계 경로를 더욱 원활히 하고 주동 적으로 대중의 감독을 받으며 대중 의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매달 15일 (명절이나 공휴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지연)을 '공개 래신래방 접대일' 로 지정했다. 성, 시, 현 3급 공안 기관 지도부 성원들이 직접 공안기 관 인민방문접대실에서 공개 래신래 방 활동을 하게 된다.

공개 래신래방 접대는 엄격히 래신 래방사업의 법치화 사업 요구에 따라 진행되며 주로 공안기관의 집법 사건처리, 봉사관리, 대오건설 등의 문제를 접수하고 반영한다.

동시에 '세가지 접수 불가, 두가지 재접수 불가' 원칙을 엄격히 시행한 다. 다음 정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각급 공안기관 지도자는 공개 접 방 시 접방을 거절할 수 있으나 반드 시 등록해야 한다.

민원사항이 이미 접수된 상태에서 규정 기한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재 차 같은 민원사항을 제출한 경우에 는 접수하지 않는다.

처리 권한이 있는 공안기관을 넘어 요구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하 지 않는다.

재판기관과 검찰기관 관할에 속하 는 민원사항은 접수하지 않는다.

같은 사실과 리유로 제출된 민원사 항중 이미 재심 절차에 들어간 경우 에는 재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법에 따라 종결된 법률 관 련 소송 민원사항은 재접수하지 않 는다.

이에 공고한다.

길림성공안청 2025 년 7 월 11 일

### 돈화법원 층간소음 갈등 성공적으로 해소

최근, 돈화시인민법원은 층간소음 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성공적으 로 해소했다.

악기 연주를 즐기는 리모는 밤 늦게까지 음악을 틀어놓는 습관 이 있었다. 그러나 바로 웃집에 사 는 장모 부부는 이 소음으로 인해 매일 새벽마다 잠에서 깨는 고통 을 겪어야만 했다. 밤마다 아래집 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로 잠을 잘 수 없다 보니 장기간 잠이 부족 해지면서 장모의 정신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혈압도 높아졌다. 장모는 여러차례 아래 집에 찾아가 리모와 대화를 나누 면서 소음을 줄일 것을 건의했다. 처음에 리모는 사과하면서 조심하 는 척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화가 치 밀어오른 장모는 아빠트단지 주민 단체채팅방에 "아래집에서 매일 밤 고의로 소음으로 피해를 준다." 는 폭로 글을 올렸다. 이에 굴욕감 을 느낀 리모는 오히려 음량을 높 이며 보복에 나섰고 두 집의 갈등 은 이로 인해 더욱 깊어졌다. 결국 어쩔 수 없게 된 장모는 리모를 상 대로 돈화시인민법원에 소송을 제 기하여 소음민페행위를 중지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리모 에게 요구했다.

대자 교 다 있다. 담당 법관은 량측 당사자들을 별 도로 불러 조정을 진행했다. 한편 으로는 '이웃 정'의 층면에서 감정 과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상대방의 립장에서 생각해보라고 권장하면서 더 많은 리해와 관용을 당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적 관점에서 〈중화인민공화국소음오염예방퇴치법〉과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리모를 교육하는 동시에 갈등이 악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결과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위험을 알려주었다. 또한, 장모에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권고하며 이웃 사이에 화합을 중시해야 하고 요구사항을 표현할 때는 방법과 방식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의 끈질긴 노력 끝에 리모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장모에게 진 심으로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음악 재생 시간과 볼륨 크기를 엄격 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장모에게 일부 방음재료를 사주겠다 고 주동적으로 제안했다. 장모도 주 민 단체채팅방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며 정신적 손 해배상 청구를 취소했다.

돈화시인민법원은 '작은 사건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대중 신변의 '작은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대중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줌으로써 대중들

의 사법 획득감과 만 족도를 높였다.

, / 오건기자

# 100 여대 휴대전화 감추고 입국하려던 남녀, 세관에 덜미



최근, 광동성 주해시 공북세관 소속 갑구세관은 공북통상구를 통해 중고 휴대전화 102 대를 몸에 숨겨 입국하려던 남녀 범죄용의자를 각각 1 명씩 적발했다.

당일 8시 28분경, 한쌍의 남녀가 유모차를 밀고 공북통상구 출입경검사대 '록색통로'를 거쳐 입국했다. 세관 사업일군이 수색하려하자 녀성은 아이를 유모차에 둔 채급히 도망치려고 했다. 세관 사업일군은 즉각 출동해 순식간에 녀성의 도주를 제지했다.

수색 결과, 남성의 다리와 녀성 의 다리, 허리와 배, 가슴에서 비 닐막으로 감아묶은 대량의 중고 휴대전화가 발견되였는데 남성은 48 대, 녀성은 54 대, 총 102 대의 중고 휴대전화를 몸에 감추었다. 유모차의 아이는 녀성의 친자식 으로 밝혀졌고 두 사람은 부부관 계가 아니며 함께 세관의 감독관 리를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 났다.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은닉 방식으로 세관의 감시를 피해 법 적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할 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행위는 밀수에 해당한다면서 만약 사건의 정도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 세관발부

